

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162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7년 12월 18일

제안자 : 교 육 위 원 장

I. 수정이유

- 안 제13조의 인용조문을 수정함.

II. 주요내용

- 안 제13조 중 '제42조제3항제6호'를 '제42조제2항제6호'로 함.

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3조 중 ‘제42조제3항제6호’를 ‘제42조제2항제6호’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원안	수정안
제13조(「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(생략)	제13조(「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(원안과 같음)
제42조제3항제6호 중 “학생인권옹호관”을 “학생인권옹호관이”로 한다. (생략)	제42조제2항제6호 중 “학생인권옹호관”을 “학생인권옹호관이”로 한다. (원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

제1조(「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서울특별시교육청”을 “본청”으로, “대내·외적”을 “대내외적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호 중 “교육위원”을 “시의원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하며”를 “하되”로, “기간으로”를 “임기로”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중 “해촉”을 “위촉 해지”로,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촉 해야”를 “위촉 해지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지방공무원법”을 “「지방공무원법」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제1호 중 “보안업무규정”을 “「보안업무규정」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사무관리 규정에서 정한”을 “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「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」에 의한다”를 “「서울특별시교육청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」에 따른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“컴퓨터화일”을 각각 “컴퓨터 파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5조에 따라”로, “「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」에 의한다”를 “「서울특별시교육청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

칙」에 따른다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타사유” 를 “그 밖의 사유” 로, “당해 공인의” 를 “해당” 으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공인관수자)” 를 “(공인보관자)” 로 하고,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인관수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” 를 “공인보관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각종위원회의 청인” 을 “각종 위원회의 관인” 으로, “당해위원회의 서무책임자” 를 “해당 위원회의 업무담당자” 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관수방법)” 을 “(보관방법)” 으로 하고,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집무이외의” 를 “업무 외의” 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중 “찍음” 을 “날인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공인관수자” 를 “공인보관자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끝자” 를 “마지막 글자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공인관수자” 를 “공인보관자” 로 한다.

제11조 중 “공인의 관수자” 를 “공인보관자” 로 한다.

제3조(「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” 을 “본청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소속공무원” 을 “소속 공무원” 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공무원” 을 “소속 공무원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휴직중인” 을 “휴직 중인” 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파견중인” 을 “파견 중인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예산의 범위 내에서” 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 로, “소속공무원” 을 “소속 공무원” 으로 한다.

제4조(「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소속하에” 를 “소속으로” 로, “운영에 관하여 필요한” 을 “운영에 필요한” 으로 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” 을 “제2항

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” 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회무” 를 “사무” 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 를 “각 호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안전배부등)” 을 “(안전배부 등)” 으로, 제목 외의 단서 부분 중 “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” 을 “긴급하게 심의가 필요한 안전의 경우는” 으로 한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 를 “각 호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예산의 범위내에서” 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 로 한다.

제5조(「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 중 “위촉 위원” 을 “위촉위원” 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중 “해촉” 을 “위촉 해지” 로,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위촉 을 해제” 을 “위촉 해지” 로 한다.

제7조의 단서 중 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” 를 “경우는 예외로 한다” 로 한다.

제10조 중 “따라 위촉된 위원” 을 “따른 위촉위원” 으로, “예산의 범위 내에서” 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 로 한다.

제6조(「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촉” 을 각각 “위촉 해지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해촉” 을 “사임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지방공무원법” 을 “「지방공무원법」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해촉을” 을 “위촉 해지를” 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” 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 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” 를 “연도

마다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” 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범위 내에서” 를 “범위에서” 로, “시교육청” 을 “서울특별시교육청” 으로 한다.

제7조(「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학생수” 를 각각 “학생 수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학생수” 를 “학생 수” 로 하며, 제1호 중 “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” 을 “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50 이하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” 을 “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” 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” 을 “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하” 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” 를 “제1항에도 불구하고” 로, “6개월 이내” 를 “6개월” 로 한다.

제8조(「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제2조제2항에 따라” 로, “공무원이나 또는” 을 각각 “공무원 또는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” 을 “제1항에 따른 2개 이상” 으로, “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, 협의회간” 을 “걸치는 협의회 또는 협의회 간의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시·도교육청 본청” 을 “본청” 으로, “담당관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” 을 “담당관 등 보조·보좌기관 단위는” 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중 “협의회에의” 를 “협의회에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의” 를 “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” 로, “각호” 를 “각 호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경리” 를 “재무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제5호의 규

정에서 비밀업무”를 “제1항제5호에 따른 기밀업무”로, “비밀업무”를 “기밀업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2조제1항에 따라”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업무중 협의회 의”를 “업무 중 협의회에”로, “직책 또는”을 “직책이나”로 한다. 제4조제1항 중 “소속공무원들”을 “소속 공무원”으로, “7일이상”을 “7일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2이상”을 “2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의”를 “제2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”로, “제1호서식에 의하되”를 “제1호서식으로 하되”로, “별지 제1호서식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7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3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3항에 따른”으로, “7일 이내”를 “7일 이내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”를 “등은 법령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10인 이내”를 “10명 이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1할 이상”을 “10퍼센트 이상”으로, “가급적 1명 이상”을 “1명 이상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성별 비율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”을 “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잔여임기”를 “남은 임기”로, “잔여임기가 3월 이내”를 “남은 임기가 3개월 이내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소속공무원중”을 “소속 공무원 중”으로, “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4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9조(「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유아수”를 각각 “유아 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유아수”를 “유아 수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” 를 “제1항에도 불구하고” 로, “6개월 이하” 를 “6개월” 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하나에” 를 “어느 하나에” 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제22조의4제4항에서 규정한” 을 “제22조의4제5항에 따른” 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제22조의9” 를 “제22조의10” 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제22조의10” 을 “제22조의11” 로 한다.

제10조(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” 를 “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” 로 한다.

제11조(「서울특별시 초등학교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수강료 징수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초등학교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수강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” 을 “징수에 필요한” 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징수기일)” 을 “(징수일)” 로,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당해” 를 “해당” 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 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법령에 의하여” 를 “법령에 따라” 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수강증인자가” 를 “수강 중인 사람이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12조(「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제6조에 의한 수상후보자 추천후” 를 “제6조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후에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인” 을 “1명” 으로, “5인이상 7인이내” 를 “5명 이상 7명 이하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“자는” 을 “사람은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당해연도” 를 “해당 연도” 로 한다.

제8조 중 “심사위원회의심사” 를 “심사위원회의 심사” 로 한다.

제9조 중 “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” 를 “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” 로 한다.

제13조(「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3항 단서 중 “범위 내에서” 를 “범위에서” 로 한다.

제33조제2항제9호 중 “학생인권지원센터” 를 “학생인권교육센터” 로 한다.

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촉” 을 “위촉하거나 임명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위원” 을 “위촉위원” 으로, “3분의 2를” 을 “10분의 6을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남은 기간으로” 를 “남은 임기로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촉” 을 “위촉 해지” 로 한다.

제35조제4항 중 “위촉” 을 “지명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중 “위원회의” 를 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” 으로, “범위 내에서” 를 “범위에서” 로 한다.

제37조제1항 중 “학생참여단(이하 “참여단” 라 한다)를 설치” 를 “학생참여단(이하 “참여단” 이라 한다)을 구성·운영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범위 내에서” 를 “범위에서” 로, “위촉” 을 “선발” 로 한다.

제38조제3항 중 “상임의 계약직공무원” 을 “일반임기제공무원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해촉” 을 “위촉 해지” 로 한다.

제42조제2항제6호 중 “학생인권옹호관” 을 “학생인권옹호관이” 로 한다.

제47조의 제목 중 “구체신청” 을 “구제신청” 으로 한다.

제49조제3항 중 “필요하다고 판단되는” 을 “필요한” 으로, “학생인권위원회” 를 “위원회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보고하여야” 를 “알려야” 로 한다.

제14조(「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실과교원”을 “공업계 전문교과 교원”으로, “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”을 “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서무실”을 “행정실”로, “서무실장은 학교의 서무책임자가 되고”를 “행정실장은 학교의 행정실장이 겸임하고”로, “주임교사”를 “부장교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“(서무실)”을“(행정실)”로 하고,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서무실”을 “행정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기타 일반서무”를 “그 밖에 일반행정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호 중 “실과교원”을 “공업계 전문교과 교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5조(「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 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대한”을 “매우 큰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”를 각각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소속하에”를 “소속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6조(「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

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 이라 한다) 관할하에 있는 사립학교교육의 진흥” 를 “제51조에 따라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 이라 한다)이 관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 진흥” 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이라 함은” 을 “이란” 으로, “지원대상년도” 를 “지원대상연도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라 함은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” 를 “란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라” 로, “제” 를 “모든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이라 함은” 을 “이란” 으로, “의한” 을 “따른” 으로, “당해연도” 를 “해당 연도” 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립학교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행하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1” 을 “사립학교의 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립학교의 학교장” 을 “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립학교의 장” 으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1” 을 “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실업계 학교” 를 “특성화고등학교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에 의한” 을 “제1항에 따른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기타교육감” 을 “그 밖에 교육감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제1항에 따라” 로, “당해” 를 “해당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사립학교법 또는 동법시행령의 규정” 을 “「사립학교법」 또는 같은 법 시행령” 으로, “교부결정 시” 를 “교부결정 시” 로 한다.

제9조제1항 본문 중 “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제5조제4항에 따라” 로, “지원금은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에” 를 “지원금을 지원목적

외의 용도로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 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사립학교법 또는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「사립학교법」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” 으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각호” 를 “각 호” 로, “날로부터 7일이내” 를 “날부터 7일 이내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특수교육진흥비지원액중” 을 “특수교육진흥비지원액 중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소속공무원” 을 “소속 공무원” 으로 한다.

제17조(「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[서식 1]” 을 “별지 제1호서식” 으로, “[서식 2]” 를 “별지 제2호서식” 으로, “[서식 3]” 을 “별지 제3호서식” 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” 를 “제8조에도 불구하고” 로 한다.

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1과” 를 “다음 각 호와” 로 한다.

제15조 중 “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” 을 “외의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 관련 법령” 으로 한다.

제18조(「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2항, 제33조제1항 및 제2항, 제35조, 제42조제1항 및 제46조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 을 각각 “행정안전부장관” 으로 한다.

제19조(「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본청의 소속교육기관”을 “본청 관할 교육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제36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34조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교육청의 소속”을 “교육청 관할”로 한다. 제7조제1항 중 “부터 동년”을 “에 시작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소속연도”을 “회계연도”로, “년도에 의한다”를 “연도에 따른다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제8조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8조에 따른”으로, 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8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채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”를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와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”을 “제16조에 따라 불용결정”으로,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요하는”을 “필요한”으로, “남음이 없는 경우”를 “남아 있지 않은 경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매수인”을 “매수인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4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4항에 따른”으로, “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”를 “견적가격이나 거래실례가격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서식에 의거 다음의”를 “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비품물품”을 “비품”으로, “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운영카드에 “정수물품”이란 고무인”을 “제9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에 정수관리대상물품이라고 새긴 고무도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이외에”를 “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”로, “보조부”를

“보조장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, “전산입력처리”를 “전산입력자료”로 한다.

제25조의 제목 중 “조제”를 “작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장표”를 “장부와 전표”로, “매년도 별도”를 “연도마다”로 하며, 같은 조 단서 중 “구장부”를 “기존 장부”로 한다.

제27조제1항 중 “제90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90조에 따른”으로, “장이”를 “해당 관서의 장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”를 “제1항에도 불구하고”로 한다.

제28조의 제목 중 “입회”를 “참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은”을 “제27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”으로, “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”를 “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직원에게 참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입회”를 “참관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1항 중 “제2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28조제1항에 따라”로, “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”을 “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 2부를”로, “1통을 당해”를 “1부는 해당”으로, “입회자”를 “참관인”으로, “1통은”을 “1부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입회자가 연서”를 “참관인이 연서로”로 한다.

제32조제1항 중 “제31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31조에 따른”으로, “인계전일로서”를 “인계 전달로”로, “연서”를 “연서로”로 한다.

제33조의 제목 중 “타직원”을 “다른 직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”를 “사망이나 그 밖의 사고로”로, “자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직원에게 제32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20조(「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교육시설관리사업소”를 “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

리본부” 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건설산업기본법” 을 “「건설산업기본법」” 으로 한다.
제21조(「서울특별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본문 중 “법령에 의한” 을 “관련 법령에 따른” 으로, “당해” 를 “해당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휴학자에 대하여는” 을 “휴학생의 경우는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전기 또는 전월” 을 “분기 또는 그달 전부” 로, “당해 기 또는 당해 월” 을 “해당 분기 또는 그달” 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별표 1에 의하여 4기(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)” 를 “별표 1과 같이 4분기(방송통신고등학교는 상·하반기)” 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징수기일)” 을 “(징수일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징수기일” 을 “징수일” 로, “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개시 10일 이전” 을 “해당 분기 또는 그달의 시작일 10일 전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” 를 “제1항에도 불구하고” 로, “징수기일은 학기개시” 를 “징수일은 학기시작일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” 를 “제1항에도 불구하고” 로, “징수기일” 을 “징수일” 로 한다.

제22조(「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06조에서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” 을 “제106조부터 제109조까지에 따라” 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“해촉” 을 각각 “위촉 해지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해촉” 을 “사임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23조(「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
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소속의 서울특별시교육감과 본청,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” 를 “소속 공무원 중” 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44조제2항” 을 “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64조” 로, “행정자치부의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” 을 “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” 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행정자치부의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” 을 “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” 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” 를 “점검하여” 로, “제12조” 를 “제11조” 로 한다.

제24조(「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소속 하에” 를 “소속으로” 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연 2회 반기별료” 를 “반기마다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연 4회 분기별료” 를 “분기마다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소지한 자” 를 “소지한 사람” 으로, “자로” 를 “사람을 포함하여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